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58
----------	-------

발의연월일 : 2022. 4. 1.

발 의 자 : 송재호·한준호·김희재
이장섭·천준호·오영훈
위성곤·최종윤·김정호
이형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유튜브, SNS상에서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협찬 및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상품을 추천하거나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광고를 하는 뒷광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기만과 오인 등의 피해가 발생함.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공간에서의 사회·문화·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사용이 급증하면서 특정 브랜드의 상품이나 상표가 가상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형태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광고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유명인이 추천·보증하거나 가상 공간에 노출되는 상품이나 상표가 광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인터넷,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상품등을 추천·보증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 등 또는 상표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소비자 및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및 제2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추천·보증”이란 광고를 위탁한 사업자등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음성, 문자, 도형,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7.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이란 참여자가 현실세계와 유사한 사회·문화·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광고 사실의 고지 의무) ① 누구든지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텔레비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등을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등 또는 상표(「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노출하거나 참여자가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참여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를 “제5항까지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추천·보증을 한 자
2.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등 또는 상표를 노출하거나 참여자가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추천·보증”이란 광고를 위탁한 사업자등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음성, 문자, 도형,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7.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이란 참여자가 현실세계와 유사한 사회·문화·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3조의2(광고 사실의 고지 의무) ① 누구든지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텔레비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등을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등 또는 상표(「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노출하거나 참여자가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참여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①·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2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추천·보증을 한 자

2.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등 또는 상표를 노출하거나 참여자가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까지에-----

-----.